

제 975 호
1983. 7. 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시장 김성배
공보관 김영근
전화 :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례

◎ 조 례

제 1775 호 :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증개정조례 4

제 1776 호 :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증개정조례 5

제 1777 호 :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 5

제 1778 호 :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6

제 1779 호 : 서울특별시 시립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6

제 1780 호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 7

제 1781 호 :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7

제 1782 호 :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 7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326

제 1783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1784 호 :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 1785 호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1786 호 : 서울특별시 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9
제 1787 호 : 서울특별시 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	10
제 1788 호 :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설치조례	10
제 1789 호 :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	12
제 1790 호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2
제 1791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에 관한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15

◎ 규 칙

제 2028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현업기관설치규칙중개정규칙	17
제 2029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에 관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7
제 2030 호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28
제 2031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31

◎ 교육위원회규칙

제 274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민간강학위원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31
---	----

◎ 고 시

제 35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결정	32
제 360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33
제 36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결정및지적승인	33
제 362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및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결정	34
제 363 호 : 도림구역제 1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35
제 364 호 :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고시	35
제 365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36
제 366 호 : 일반가스사업허가기준변경고시	37
제 367 호 : 서울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37
제 368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41
제 36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41

제 370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변경결정	42
◎ 구청 고시	
제 652 호 : 사도개설허가고시	42
◎ 공 고	
제 390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에 따른서무공람공고.....	43
제 391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44
제 392 호 : K · 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46
제 393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에 따른공람공고	47
제 394 호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완료공고	47
제 396 호 : 주택개량제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48
제 398 호 : 무기과열지구지정	48
제 399 호 : 도립구역제 14 지구제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문의알공람공고.....	49
◎ 구청 공고	
제 24 호 : 판인폐기공고	49
제 25 호 : 판인개각공고	49
◎ 사 령	

조 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7. 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75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 일반회계정원표중 6급란 정원 "321"을 "322"로 정원내용 행정직 "216"을 "220"으로, 전기직 "1"을 "9"로, 수의직 "4"를 "3"으로 하고, 7급란 정원 "396"을 "398"로, 정원내용란 행정직 "280"을 "283"으로, 약무직 "4"를 "3"으로 하고, 고용직 정원 "510"을 "508"로, 정원내용란 운전원 "104"를 "103"으로, 수의 "26"을 "25"로, 행정보조원 "93"을 "92"로 한다.

(별표 1-2) 중 별정직 정원 "25"를 "26"으로, 정원내용 "7급상당 5(전산처리관 1, 기계처리관 4)"를 "7급상당 6(전산처리관 2, 기계처리관 4)"로 하고, 기능직 정원 "6"를 "9"로 정원내용란에 "6등급:기계장 1, 8등급:기계장 2"를 추가하고, 고용직 정원 "591"를 "592"로, 정원내용란에 "수위 1"를 추가하고, 합계 "622"를 "627"로 한다.

(별표 2) 가. 일반회계정원표중 6급정원 "869"를 "872"로 정원내용란 행정직 "687"를 "690"으로, 7급정원 "1,119"를 "1,125"로, 정원내용란 한직직 "797"를 "803"으로, 8급정원 "1,622"를 "1,628"로, 정원내용란 별정직 "1,244"를 "1,250"으로, 9급정원 "1,622"를 "1,625"로, 행정직 "1,291"를 "1,294"로 하고, 고용직 정원 "2,185"를 "2,260"으로 정원내용란 감시원 "482"를 "550"으로, 운전원 "273"을 "280"으로 하고, 합계 "7,907"를 "8,000"으로 한다.

(별표 3) 중 고용직정원 "54"를 "52"로, 정원내용란 운전원 "3"을 "1"로 하고, 합계 "76"을 "7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76 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 제 1 항중 “지방농림기과 2 인” 다음에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기계기과 2 인”을 삽입한다.

(별표) 가, 공사본부 정원표중 5 급정원 “22”를 “24”로, 정원내 용란중 전기또는 기계직 “3”을 “5”로, 6 급정원 “50”을 “55”로 정원내용란 “토목직 22”를 “토목 직 27”로, 7 급정원 “85”를 “90”으로, 정원내용란 “토목직 37”를 “토 목직 42”로, 8 급정원 “43”을 “48”로, 정원내용란 “토목직 15”를 “토목직 20”으로 고용직정원 “39”를 “37”로 정원내용란 운전원 “9”를 “7”로 하며

나, 지원사업소 정원표중 기능직정 원 “231”을 “239”로 고용직 정 원 “189”를 “203”으로 합계 “514”를

“536”으로 하며, 건설사업소 정원표 중 기능직 7 등급 전기장 “8”을 “9”로, 전공 “53”을 “64”로 하여 합계 “348”을 “360”으로 하고 건설자재사업소 정원표중 7 등급 기 계장 “33”을 “36”으로, 8 등급기 계원 “2”를 “6”으로, 고용직 장 무원 “18”을 “21”로, 합계 “82” 를 “9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 개정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77 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용직 정원 “185”를 “184”로, 정원 내 용란의 운전원

“4”를 “3”으로, 잡무원 “1”를 “3”으로, 안내원 “42”를 “4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778 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용직정원 “115”를 “121”로, 정원내용란 “운전원 1.”를 “운전원 2.”로, “경비원 12”를 “경비원 16”로 “사진사 1”를 추가하고 합계 “158”를 “16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779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7급정원 “137”를 “138”로, 정원내용란 약무직 “34”를 “35”로, 고용직정원 “317”를 “320”으로, 정원내용란의 수취 “18”를 “20”으로, 냉난방공 “1”를 “2”로 하고, 합계 “1,193”을 “1,19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780 호

서울특별시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능직정원 9"를 "10"으로, 정원내용란 "7등급9(기계장4, 전기장5)"를 "7등급10(기계장5, 전기장5)"로 고용직정원 "291"를 "289"로 정원내용란 운전원 "12"를 "11"로 기계공 "5"를 "4"로 하고 합계 "737"을 "73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81 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용직 정원 "40"을 "39"

로 정원내용란 운전원 "3" "7"로, 합계란 "63"을 "6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82 호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용직 "34"를 "35"로 정정보조원 "1"을 "2"로 하고, 합계란 "77"을 "78"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83 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
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설치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8급정원 "21"를 "25"
로, 정원내용 "행정직 17"를 "행정
직 21"로 하고, 합계 "250"을 "254"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84 호

서울특별시종합종말처리사
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종말처리사업소 설
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기능직 "66"를 "65"
로, 정원 내용란 7등급 "기계 또
는 전기장 4"를 "기계 또는 전기
장 3"으로, 고용직 정원 "108"을
"107"로 정원 내용란 운전원 "4"
를 "5"로 경비원 "10"을 "8"로
하고, 합계란 "214"를 "21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85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별정직 정원 "10"을 "19"로 하고, 정원 내용란에 "6급 상당 9 (케비준 소대장)"을 추가하며 기능직 정원 "49"를 "50"으로, 정원 내용란 7등급 "32"를 "33"으로, 고용직 정원 "845"를 "837"으로 정원내용란의 운전원 "40"을 "41"로 조절수 "507"을 "498"로 합계란 "1,055"를 "1,057"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민방공 경보통제소 설치조례중 개정조 (별표)

예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여 호

◎서울특별시조례제 1786 호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민방공 경보통제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 중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통신기사"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구 분	정 원	정 원 개 명
5 급	1	행정 또는 별정직 1
6 급	2	행정직 1, 통신직 1
7 급	4	행정직 1, 통신직 3
8 급	1	전기직 1
9 급	1	
기능직	9	7등급: 통신장 2, 8등급: 통신원 7
고용직	6	사환 1, 전공 1, 타자원 1, 통신원 3
합 계	23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87 호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가. 근로자 회관 정원 표중 교육작란 냉난방공 "1"을 "2"로, 수위 "1"을 "2"로 보조수 "3"을 "2"로 "취사부 3" 다음에 "행정보조원 2"를 추가하고 "목공 1" 및 "이·미용사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788 호

서울특별시소방교육대설치조례

제 1 조 (설치)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와 의용소방대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소방교육대 (이하 "교육대"라 한다) 설치한다.

제 2 조 (위치) 교육대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3 조 (대장) ① 교육대에는 대장 1인을 두고 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교육대의 운영 및 교육훈련을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교육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 (하부조직) ① 대장 밑에 교학담당과 훈련부를 두고 교학담당은 지방소방위로, 훈련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② 교학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p>1. 서무, 보안, 문서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p> <p>2. 예산, 경리용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p> <p>3. 피교육 대원의 차출, 등록, 학급편성에 관한사항</p> <p>4.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p> <p>③ 훈련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교육훈련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p> <p>2. 교재의 편찬과 훈련용 기자</p>	<p>재 관리에 관한 사항</p> <p>3. 교육 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p> <p>4. 피교육자의 대외명량 제도 및 퇴장관리에 관한 사항</p> <p>5. 화재예방 및 긴급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p> <p>제 6 조 (시정규직) 교육부의 훈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도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소 방 공 무 원 정 원 표

계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역
소 방 비	1	
소 방 경	1	
소 방 위	5	
소 방 장	2	
소 방 교	3	
소 방 사	1	
고 용 원	2	
(타 자 원)		
계	14 명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7. 18.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조례제 1780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구분	정원	정원내용
소방직	1,783	소방정 9, 소방령 18, 소방경 45, 소방위 61, 소방장 182, 소방교 268, 소방사 1,200
고용직	104	타자원 10, 대장점리원 9, 청부 9, 냉난방공 11, 사환 65
합계	1,887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 7. 18.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조례제 1790 호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림기

장”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소장 밑에 운영과, 관리과, 동물부 및 동식물연구실을 두고, 동물부장 밑에 동물관리과, 사육1과, 사육2과, 진료과 및 식물과를 둔다.

②동물부장은 지방수의관 (4급)으로,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기계기과,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농림기과로, 동물관리과장은 지방축산기과 또는 지방수의관 (5급)으로, 사육1과장, 사육2과장

및 진료과장은 지방수의관(5급)으로, 식물과장은 지방농림기좌로 동식물연구실장은 지방전문직으로 보한다.

③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관인관수, 보안 및 청중 단속
2. 인사, 복무, 교육 및 직원후생
3.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5. 세입 및 세출의 총괄관리
6. 공원시설운영 및 이용통제
7. 공원경비 및 청소
8. 매표 및 수표관리
9. 동물원 이용안내 및 홍보
10. 민자시설지도 감독
11. 기타 소내 타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 전기, 통신 및 건축물 유지 관리보수
2. 시설관리용역 업체지도 감독
3. 공원조경공사 및 관리
4. 공원의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⑤동물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수급관리
2. 동물의 전시 및 홍보
3. 동물의 자력관리 및 보존
4. 동물사료 수급관리
5. 동물사료생산 및 가공
6. 기타 동물부내 타과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⑥사육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학장 제1, 2, 3 아프리카관 아프리카 원숭이관, 대동물관, 야행동물관, 호주관, 곤충관의 동물 사육증식 및 관리
2. 어린이동물원(물개랜드, 동물아파트, 마구, 꽃마차, 페팅코너)의 운영관리 및 동물사육증식
3. 어린이동물 교실 운영지도
4. 기타 사육2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물 사육에 관한 사항

⑦사육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라시아 초식동물우리, 동양관 맹수우리, 조동원관 새우리, 수달우리, 말리시아곰우리, 상목우리, 교양이우리, 복유우리의 동물사육 증식 및 관리
3. 해안동물관, 아메리카 초식동물관, 남아메리카관, 리타우리의 동물사육, 증식 및 관리

⑧진료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임상진료 및 관리관리
2. 동물의 임상병리검사 및 처방
3. 동물의 방역관리

⑨식물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p>1. 식물원 및 해양식물원 운영관리</p> <p>2. 녹용 원예작물 재배 및 포지관리</p> <p>3. 식물 수급관리등 식물원과 관련된 일체의 기능 수행</p> <p>⑩ 동식물 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동물의 생애, 사육, 진료,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p> <p>2. 식물의 생애, 육립, 보호 재배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p> <p>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동식물에 관한 조사연구</p> <p>제 6 조 (사무조정) 사육 1 과와 사육 2 과 간의 분장사무는 소장이 업무편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본 조례에서 정한 3급 공무원 1명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 시행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본조례 시행으로 지방서기관 1명 감축에 따른 서울특별시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초과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 정원과 전체 현원이 동일시 될때까지 별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u>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u></p>	

계급별	정원	정원내용
4 급	1	수의직 1
5 급	7	행정직 1, 농림직 1, 농림.기계, 또는 전기직 1, 축산 또는 수의직 1, 수의직 3
6 급	20	행정직 5, 기계 또는 전기직, 건축직 1, 농림직 3, 축산직 1, 수의직 9
7 급	30	행정직 11, 건축직 1, 기계직 1, 전기직 1, 통신직 1, 간호직 1, 농림직 4, 수의직 8, 축산직 1, 학예연구직 1
8 급	17	행정직 8, 건축직 1, 축산직 5, 토목직 1, 기계직 1, 전기직 1
9 급	3	행정직 1, 농림직 2
고용직	157	수위 4, 행정보조원 2, 타자원 2, 운전원 4, 교환원 2, 영화기

제급별	정원	정원내공
		사 1, 사철사 1, 전달부 1, 사환 1, 청부 6, 잡무원 7, 감시원 30, 안내원 9, 매표원 14, 전공 2, 기계공 1, 운전원 1, 목공 1, 원정 5, 사육원 58, 특수교사 2, 시험원 2, 보조 1
합계	235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에 관한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7 .18</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조례 제 1791 호</p> <p>서울특별시지하철도사업에관한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 지하철도 사업에 관한 기구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8 조 제 3 항중 "자재창고의 지도감독"을 관할현업기관의 지도감독"으로, 제 5 항중 "제도관리보수 및</p>		<p>공우소의 지도감독"을 "제도규칙관리 및 거량"으로, "차량공작소의 설계 및 시공감독"을 "관할현업기관의 지도감독"으로 한다.</p> <p>(별표 1) 중 6 남정원 "64"을 "59"으로, 성원 내공한 공 우목적 "38"을 "33"으로, 7 남정원 "66"을 "61"로, 정원내공한공 우목적 "39"을 "33"으로, 5 남정원 "44"을 "39"로, 성원내공한공 우목적 "41"을 "36"으로, 정원내공한공 우원 "38"을 "36"으로, 정원내공한공 운전원 "7"을 "5"로 하고, 남정원 "242"를 "225"으로 한다.</p> <p>(별표 2) 를 별첨과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별표 2)		
지하철 운영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1	행정, 공업 또는 시설직 1
4 급	3	행정직 2, 공업직 1
5 급	15	행정직 6, 토목직 1, 건축직 1, 전기직 1, 기계직 3, 통신직 2, 기계직 또는 전기직 1
6 급	48	행정직 15, 토목직 3, 건축직 2, 전기직 11, 기계직 11, 통신직 6
7 급	58	행정직 14, 토목직 8, 건축직 6, 전기직 11, 기계직 11, 통신직 8
8 급	22	행정직 9, 토목직 3, 전기직 3, 통신직 2, 기계직 5
9 급		
기능직	3,284	5 등급: 철도현업 57 6 등급: 철도현업 246 7 등급: 철도현업 523, 기계장 1 8 등급: 철도현업 840 9 등급: 철도현업 1,057 10 등급: 철도현업 560
고용직	258	운전원 6, 전공 12, 사진사 1, 수위 5, 목공 1, 감시원 15, 정비 6, 타자원 14, 행정보조원 11, 전달부 3, 조사원 3, 건설보조수 2, 잡무원 17, 선로수 17, 통신원 4, 여객수 110, 정리수 23, 영양사 1, 간호보조원 2, 사환 3, 보안수 2
합 계	3,689	

규 칙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현업기관 설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 7. 18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2028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현업기관
설치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현업기관 설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에 관한 기구 설치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 (이하 "운영사업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현업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관의 명칭, 위치, 직무등)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설치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 및 직무는 별표

와 같다.

제 3 조 (기관장) ①기관에 기관장 각 1인을 두며 그 직명은 별표와 같다.

②기관장은 운영사업소장의 명을 받아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등)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사업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 (분소) 운영사업소장은 현업기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직무대행) 기관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 연 기 관 설 치 표				
기 관 명	위 치	기 관 장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 지하 철 자재창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자동 208 의 9	관리장	지방행정주시	자재출납 및 보관관리
서울특별시 지하 철 제 1 운전사령 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 로 5 가 지하철역사내	사령장	지방기계기좌, 지방기계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지하철 제 1 호선 열차 의 운전정리
서울특별시 지하 철 제 2 운전사령 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 배동 518 번지	사령장	지방기계기좌, 지방기계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지하철 제 2 호선 열차 의 운전정리
서울특별시 지하 철 제 1 승무관리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 답동 182 번지	소 장	지방기계기좌, 지방기계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지하철 제 1 호선 열차 의 운전 및 여객수송
서울특별시 지하철 제 2 승무관리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 답동 182 번지	소 장	지방기계기좌, 지방기계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지하철 제 2 호선 열차 의 운전 및 여객수송
서울특별시 지하철 보선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 배동 518 번지	소 장	지방토목기좌, 지방토목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궤도 및 토목구조물의 유지관리와 개량보수
서울특별시 지하철 영선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 배동 518 번지	소 장	지방기계기좌, 지방건축 기좌, 지방기계기사, 지 방건축기사 또는 지방 철도기장 5 등급	영조물 및 설비시설의 유지관리와 개량보수

기 관 명	위 지	기 관 장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 입차소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담 동 182 번지	소 장	지방기계기좌, 지방전기 기좌, 지방기계기사, 지 방전기기사 또는 지방 철도기장 5 등급	전동차의 입상, 월상, 수시검수 및 전동차청 소관리
" 공작상	"	인 심	지방기계기좌, 지방전기 기좌, 지방기계기사, 지 방전기기사 또는 지방 철도기장 5 등급	· 전동차의 중간, 전반 수시검수 및 수선 · 기지시설감비 및 후 생시설 운영관리
" 제 1 전력사업실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가지하철역 사내	사령장	지방전기기좌, 지방전기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지하철제 1 호선 인력운 영과 신호통신장애 감 사 및 통제
" 제 2 전력사업실	서울특별시관악구방배 매 518 번지	사령상	지방전기기좌, 지방전기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지하철제 2 호선 인력운 영과 신호통신장애감사 및 통제
서울특별시지하철 입차소	"	소 장	지방전기기좌, 지방전기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조명, 전기시설 및 기 기의 유지관리와 개량 및 운영
서울특별시지하철 신호보안소	"	소 장	지방전기기좌, 지방통신 기좌, 지방전기기사, 지방통신기사 또는 지 방철도기장 5 등급	신호보안시설 및 기 기의 유지관리와 개량 및 운영
" 동차소	"	소 장	지방전기기좌, 지방통신 기사 또는 지방철도기 장 5 등급	동차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와 개량 및 운영

2335

기 관 명	위 치	기 관 장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서울역 앞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서울역 광장지하	역 장	지방철도기장 5 등급 또는 지방철도원 6 등 급	1. 승차권 관리판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도 및 역사의 관리
서울특별시시청앞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대한문 시청앞간 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종각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1가 44- 종로 2가의 5간 지하	"	"	"
서울특별시종로 3 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가 92- 종로 3가 69 간 지하	"	"	"
서울특별시종로 5 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가 124의 8- 종로 5가 51간 지하	"	"	"
서울특별시동대문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6 가 78의 25- 동대문구 창신동 552간 지하	"	"	"
서울특별시신설동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 설동 85의 24 신설동 89 의 57간 지하	"	"	"

기 관 장	위 치	기 관 장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계기동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계기동 51 앞 - 계기동 36 의 12 간 앞	역 장	지방철도기장 5 등급 또는 지방철도인 6 등급	1. 승차권 관리판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도 및 역사의 관리
서울특별시상랑리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 농동 620 의 69 - 대왕 상가앞 광장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신설동 세 2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동대문구청앞 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신남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용답동 128 의 3	"	"	"
서울특별시가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용답동 246 의 1	"	"	"
서울특별시상수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상동구상수 2 가 1 동 200 의 4 앞	"	"	"
서울특별시화남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상동구화남 동 7 의 3 앞	"	"	"
서울특별시구의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상동구상동 4 가 앞	"	"	"
서울특별시영남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상동구구의 동 5 가 앞	"	"	"

2336

기 관 별	위 치	기 관 별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성내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동구시영 아파트앞	역 장	지방철도기장 5 등급 또는 지방철도원 6 등급	1. 승차권 관리 판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도 및 역사의 관리
서울특별시잠실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동구잠실 대교앞	"	"	"
서울특별시신천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동구주공 2단지앞	"	"	"
서울특별시종합 운동장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동구남서 울 대운동장앞	"	"	"
서울특별시삼성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 동 300-1	"	"	"
서울특별시선릉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 동산 41,51번지앞	"	"	"
서울특별시역삼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 동 505번지앞	"	"	"
서울특별시강남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 동 48부락앞	"	"	"

2337

기관명	위치	기관장		직무
		명칭	직명	
서울특별시교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 동 416 번지앞 (서울교대앞)	역장	지방철도기장 5 등급 또는 지방철도원 6 등급	1. 승차권 판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도 및 역사의 관리
서울특별시서초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 동산 170-1 번지앞	"	"	"
서울특별시방배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작구방배 동 225 부리앞	"	"	"
서울특별시사당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관악구사당 동 294 부리앞	"	"	"
서울특별시낙성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 동 185 부리앞	"	"	"
서울특별시서울대 입구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 동 308 부리앞	"	"	"
서울특별시봉천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 동 339 부리앞	"	"	"
서울특별시신림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 1동 74-38 앞	"	"	"
서울특별시구로 2년선지하철역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산 동 1 부리앞	"	"	"

제 975 호

시

문

1983. 7. 14

59-23

기 관 장	위 치	각 관 장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대림 지하철역	서울특별시구로구신도 림동 105-2 번지앞	역 장	지방철도기장 5 등급 또 는 지방철도원 6 등급	1. 승차권 관리, 판 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도 및 역사의 관리
서울특별시문래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 도림동 460-9 번지앞	"	"	"
서울특별시문래 3 가지하철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 래 3 가 64 번지앞	"	"	"
서울특별시영등 포구청지하철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 산 3 가 385 번지앞	"	"	"
서울특별시당산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 산 6 가 297 번지앞	"	"	"
서울특별시합정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마포구서교 동 394 번지앞	"	"	"
서울특별시동교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 동 165 번지앞	"	"	"
서울특별시신촌 (지하)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 촌모타리	"	"	"
서울특별시이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 화여대입구	"	"	"

기 관 명	위 지	기 관 장		직 부
		성 명	직 명	
서울특별시 아현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동 329-1 번지 앞	역 장	지방철도기장 5 등급 또 는 지방철도원 6 등급	1. 승차권 관리, 판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도 및 역사의 관리
서울특별시 중정보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 정보 3 가 295-60	"	"	"
서울특별시 서신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동	"	"	"
서울특별시 을지로 삼거리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	"
서울특별시 을지로 3 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 가 101-2 번지 앞	"	"	"
서울특별시 을지로 4 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 가 261 번지 앞	"	"	"
서울특별시 회동 동 남쪽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 가 117 가	"	"	"
서울특별시 신남 문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신남문 106 번지 앞	"	"	"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동대문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 1940 번지 앞	"	"	"

2338

기 관 명	위 치	기 관 장		직 무
		명 칭	직 명	
서울특별시울지로 입구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울지로	역 장	지방철도기장 5등급 또는 지방철도원 6등 급	1. 승차권관리, 판매 및 수입금 관리 2. 여객의 안내, 유 도 및 역사의 관 리
서울특별시울지로 3가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울지로 2가 101-2번지앞	"	"	"
서울특별시울지로 4가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울지로 4가 261번지앞	"	"	"
서울특별시서울운 동장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울지로 7가 117 앞	"	"	"
서울특별시신당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106번지앞	"	"	"
서울특별시상충 십리지하철역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 십리동 940번지앞	"	"	"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에 관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규칙제 202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도사업에관한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업에 관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1 항중 “서무제”를 “총무제, 인사제”로 하고, 제 2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 2 호 및 제 3 호”를 각각 “제 3 호 및 제 4 호”로 한다.

1. 총무제

- 가. 관인관수 및 문서관리
- 나. 당숙적, 보안, 방호, 청중단속 및 청사관리
- 다. 직원후생업무와 마을금고 지도육성
- 라. 급여, 연금, 의료보험 업무
- 마. 업무용 차량관리
- 바. 자체감사와 의견행사 및 회의주관
- 사. 지하철 관계법규와 사업관리규정 및 행정제도의 종합관리

아. 기타 사업소내 타과, 과내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인사제

- 가. 직제, 인력관리,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나. 소송, 소청,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인사위원회 운영
- 다. 경력, 경정과 근무신적, 병력의 종합조정
- 라. 해외 및 관외출장의 통제와 심사
- 마. 비밀취급인가 및 인사관계 증명 발급
- 바. 고충심사 업무
- 사. 교육훈련업무의 총괄
- 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제 2 항제 1 호 및 “다”목중 “공무소”를 “보안소”로, 동조동항 제 2 호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선소의 지도감독

제 11 조 제 1 항중 및 “신호통신제”를 “신호제 및 통신제”로 “신호통신제장”을 “신호제장과 통신제장”으로 하며, 동조 제 2 항 제 1 호의 목중 “차량 공작소”를 “공작소와 공작창”으로 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호제

<p>가. 신호보안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p> <p>나. 신호보안시설의 점검, 검사, 보수 및 운영의 기준설정과 기술지도</p> <p>다. 신호 보안장애 대책 강구 및 사고복구</p> <p>라. 신호보안소의 지도감독</p> <p>마. 기타 신호보안업무에 관한사항</p> <p>4. 통신제</p> <p>가.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p> <p>나. 통신시설의 점검, 검사, 보수 및 운영의 기준설정과 기술지도</p> <p>다. 통신장애 대책강구 및 사고복구</p> <p>라. 통신소의 지도감독</p> <p>마. 기타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p> <p>◎서울특별시규칙 제 2030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사무분장 규칙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사무분장규칙</p>	<p>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제별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운영과) ①운영과에 서무제, 경리제, 운영제 및 홍보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p> <p>②운영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서무제</p> <p>가. 문서, 관인, 보안 및 청중단속</p> <p>나. 인사, 복무 및 직원후생</p> <p>다. 행정재산, 장비 및 재산관리 (매점 운영등)</p> <p>라.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p> <p>마. 예산편성 및 배정</p> <p>바. 자체감사 및 사정</p> <p>사. 기타 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경리제</p> <p>가. 회계 및 물품관리</p> <p>나. 세입 및 세출의 총괄</p> <p>다. 매표 및 수표관리</p> <p>3. 운영제</p> <p>가. 공원시설 운영 및 이용통제</p> <p>나. 공원의 질서유지</p> <p>다. 공원의 청소 및 경비</p> <p>라. 민자시설 관리지도</p> <p>마. 주차장관리</p> <p>4. 홍보제</p> <p>가. 대공원에 관한 국내외 홍보</p>
---	---

나. 종합안내소 및 간이안내소 운영관리

다. 미야보호소 및 관람객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 3 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조경제, 기전제 및 시설제를 두고 조경제장은 지방농림기사로, 기전제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시설제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경제

가. 공원의 조경공사 및 관리

나. 공원의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다. 임야나 사방조림 및 산림보호

라.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전제

가. 기전, 전기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보수

나. 시설관리 용역업체 지도감독

3. 시설제

가. 건축물 및 구조물 유지관리 보수

나. 기반시설 유지관리

제 4 조 (동물관리과) ① 동물관리과에 동물관리제와 사료제를 두고, 동물관리제장은 지방수의사 (6 급) 로, 사료제장은 지방축산기사로 보한다.

② 동물관리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관리제

가. 동물의 수급관리 및 보급

나. 동물의 자육관리 및 보존

다. 동물의 전시 및 홍보

라.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료제

가. 동물의 사료수급 및 연구

나. 동물 사료생산 및 가공

다. 사료검정 및 품질관리

제 5 조 (사육 1 과) 1. 사육 1 과에 사육 1 제, 사육 2 제, 사육 3 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수의사 (6 급) 으로 보한다.

② 사육 1 과의 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육 1 제

가. 총합장, 제 1, 2, 3 호프랑크론,

아프리카원숭이 등의 종합사육 및 증식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육 2 제

가. 동물실험, 동물사육관, 호주관, 곤충관의 동물사육 및 증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 사육 3 제

가. 어린이동물원 (유아랜드, 동물 아파트, 가구, 꽃마루, 계동코너) 의 동물사육 및 증식

나. 어린이동물교실 운영지도

제 6 조 (사육 2 과) 1. 사육 2 과에 사육 1 제, 사육 2 제 및 사육 3 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수의사 (6 급) 으로

보한다.

②사육 2 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 1 계

가. 유라시아 초식동물우리, 동양관 맹수우리, 소동물관, 늑대우리, 수달우리, 말레시아곰우리, 곰우리, 사슴우리, 고양이우리, 여우우리의 동물사육 및 증식

나.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육 2 계는 열대조류관, 산새장, 곤물새장, 작은물새장, 공작장, 평장, 자고새장, 닭장, 독수리장, 수리장, 매장, 새매장, 올빼미장, 부화장의 동물사육 및 증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할 것.

3. 사육 3 계는 해양동물관, 아메리카초식동물우리, 남아메리카관, 리마우리의 동물사육 및 증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 7 조 (진료과) ①진료과에 진료계와 병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수의사 (6급) 으로 보한다.

②진료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계

가. 동물의 진료

나. 동물의 병력관리

다.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병리계

가. 동물의 임상병리 시험

나. 동물의 방역관리

제 8 조 (식물과) ①식물과에 식물계와 육림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②식물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계

가. 식물원 운영관리

나. 기타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육림계

가. 특용원에작물 재배 및 초지 관리

나. 해양식물원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서울특별시규칙제 2031 호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1 항중 “세무 3 계와 조사평가계”를 “세무 3 계, 세무 4 계(강남구 및 강동구에 한한다), 조사평가계(중구는 제외한다), 조사계(중구에 한한다)와 평가계(중구에 한한다)”로 하고 제 2 항 단서 규정중 “세무 2 계와, 세무 3 계”를 “세무 2 계, 세무 3 계 및 세무 4 계”로 하며 제 2 호중 “세무 2 계, 세무 3 계”를 “세무 2 계, 세무 3 계, 세무 4 계”로 하고 제 4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사계

- 가.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징수
- 나. 법인의 실사 계획 및 집행
- 다. 법인의 재조사 청구 진달
- 라. 법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취소 변경 및 감면
- 마. 법인의 지방세 추정

5. 평가계

- 가. 과장이 지정하는 전호에 관한 사항
- 나. 부동산에 대한 시가 조사
- 다. 부동산에 대한 시가 조사

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라. 토지 등급의 설정 및 수정
마. 과세대상 물건의 종별지정 및 수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민간장학위원회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3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규칙제 274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민간장학위원회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민간장학위원회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학군별로 대학년초에”를 “백학년초에”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삭제하며 “제 3 항”을 “제 2 항”으로 한다.

제 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제 4 조의 임무를 수행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제 6 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100px;"> <p>고 시</p> </div> <p>◎서울특별시고시제 358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결정고시</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p> <p>○ 시설조서</p>		<p>정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와 동시행령제 6 조인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7.1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학 교	강서구내발산동산 59 의 2 일대		33,131			
변경	"	"		33,398	증 267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3	12 m	225 m	내발산동산 58	내발산동 436-3	연 장 축 소
변경	"	"	"	215 m	"	"	
기정	소로	1	10 m	300 m	신사동 187 의 5	신사동 172-3	일부구간위치변경
변경	"	"	"	"	"	"	
기정	"	3	4 m	40 m	노량진동 302-181	노량진동 302-363	폐 지
변경	"	"	"	"	"	"	
기정	"	"	6 m	900 m	신림동 808-70	신림동 360-6	일부구간위치변경
변경	"	"	"	"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60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시
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 시 설 조 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와 지적부지설비 과장에게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5

서울특별시청

구분	시 설 명	위	면 적	고
기 정 변 경	주 차 장	동대문구회경동 35-6 일대	1,124 평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6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
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동법제 13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의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외 관할구상시 관할구역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5

서울특별시청

○ 녹지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녹지	강남구방배동 19 의 3 일대			1,000	900	감 100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시설	소로	2	8 m	10 m	방배동 18-3	방배동 18-3	지적승인 포함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362 호</p> <p>주택개발재개발사업계획변경및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383 호(81.10.23) 건설부고시제 343 호(78.11.11), 서고시제 51 호(82.2.4)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된 천호1구역, 봉천4구역, 신길2구역에 대하여</p> <p>2. 천호1구역과 봉천4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재개발사업 계획의 변경)</p>					<p>및 제58조(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신길2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5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위임)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가. 내역					1983.7.15 서울특별시장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천호1구역	강동구천호동산 6-1, 산8-1 번지일대	31,733	-	-	사업계획변경		
봉천4구역	관악구봉천동산 110-112 번지 일대	243,010	-	-	6m소로 위치 변경		
신길2구역	영등포구신길동 236-1, -15 외 11 필지	1,578.72	61.05	1,639.77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		
나. 도면 및 조서: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63 호

도림구역제 11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제 76 호
(77.4.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26 호 (82.8.16) 로 사업계획결정및
변경결정된 도림구역제 11 지구에 대하
여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규정에 의
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및 동법시행
령제 58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 시행개요

-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도림구역제 11 지구 재개발사업
-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종로구당주동 45-2 외 29 필지
- 다. 시행면적 : 2,321.3 m²
- 라. 대지면적 : 1,625.2 m²
- 마. 공공시설 부담면적 : 696.1 m²
- 바. 건축개요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함)
 - 진폐율 : 45 % 이하
 - 용적율 : 670 % 이하
 - 주용도 : 업무시설
 - 층 수 : 지상 15 층 이하

- 배열 : - 전면 15 미터 도로면 12 미터 이상 후퇴
- 측면 15 미터 도로면 7 미터 이상 후퇴

- 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종로구당주동 45-2
- 아. 시행기간 : 83.7.8-85.6.30
- 자. 시행인가년월일 : 1983.7.
- 차. 시행자 주소, 설명
서울특별시중구시소문동 37 번지
서울시방변호사회회장 이 병 호
- 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득의 권리 명세 : 생략
- 타. 규약 : 생략
- 파. 사업시행계획서 :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64 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
변경고시

비료관리법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의
의하여 비료생산업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하고 이를 비료관리법 시행령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과 같이 고시한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 제 1-2 호

2. 허가년월일 : 1982.12.1 3. 성명 : 이 수 빈 4. 주소 : 서울강남구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79 동 606 호 9. 변경사항		5. 사업장소재지 : 서울강서구가양동 92 6. 상호 : 제일제당주식회사 7. 상표 : 제일제당감귤건용복지 8. 변경일자 : 1983.7.18	
비료의 종류 및 품목	구 내 용 유효 성분 량	신 내 용 유효 성분 량	비 고
제 3 종 복합비료 (10-0-8)	질소전량 : 10 % 가리전량 : 8 % 초산태질소 : 1.5 % 수용성붕소 : 0.3 % 유 기 물 : 10 %	질소전량 : 10 % 가리전량 : 8 % 수용성붕소 : 0.3 % 유 기 물 : 10 %	유해성분량과 기타의 규격은 허가당시 내용과 같음.
◎서울특별시고시제 365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결정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 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청운 제 1 구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획 2.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및 제 8 조와 동법시행령 제 58 조 (권한위임) 규정 가. 내 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 국 주택개량과 및 종로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18 서울특별시장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청운제 1 구역	종로구 청운동 2,3 번지 일대	17,050	
나. 도면 및 사업계획서 : 별첨 (생략)			

결정하고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가.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조서 1) 소공구역 가) 지구계획변경 결정조서	에게 보인다. <p style="text-align: center;">1983.7.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	---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제 2 지구	중구소공동 111 번지일대	4,727 m ²	도로신설로 면적감소
변경	제 2 지구	"	3,115 "	
기정	제 3 지구	중구태평로2가 30 번지일대	3,970 "	
변경	제 3 지구	"	3,197 "	

나) 도로계획변경 결정조서

구분	노선명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신설	소로 3 류 1 호	6 m	70 m	소공동 111-25	소공동 111-12
"	소로 2 류 1 호	8 "	80 "	태평로 2 가 28-1	태평로 2 가 32
"	중로 3 류 1 호	12 "	50 "	소공동 111-7	소공동 110-4
"	" 1 류 250 호	20 "	180 "	소공동 111-5	태평로 2 가 46-5

2) 마포로제 2 구역

가) 건축계획변경결정조서

구분	지 구 명	대지면적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배 열	주 용 도
기정	제 7 지 구	4,302.5m ²	40 %	670 %	15/4	별첨	공동주택, 업무, 판매
변경	제 7 "	4,302.5	40 %이하	670 %이하	18/4	"	"
기정	제 26 "	887	38 %	445 %	10/2	"	업무시설
기정	제 27 "	1,561	38 %	445 %	10/2	"	업무, 공동주택
변경	제 26 "	2,368.3	36 % 이하	540%이하	지상 16 층이하	"	업무시설
기정	제 44 "	4,691	30 %	515 %	15/3	"	"
변경	제 44-1 "	2,592	-	-	-	-	-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	건제율	용적율	높이	배설	주 용 도
변경	제 44-2지구	1,712	40%이하	300%이하	지상5층 이하	별첨	업무시설
변경	제 44-3 "	446	-	-	-	-	-
기정	제 31 "	1,696	45%이하	670%이하	15층이하	별첨	업무시설
변경	제 31 "	1,696	46%이하	676%이하	17층이하	"	"

3) 마포로 제 2 구역
가) 지구계획변경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제 7 지구	마포구공덕동 254-11	3,500 ㎡	
변경	"	"	3,379 ㎡	지구면적유량변과함소

나) 건축계획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제율	용적율	높이	배설	주 용 도
기정	제 7 지구	3,500 ㎡	-	-	-	-	-
변경	"	3,379 ㎡	40%이하	730%이하	19/5	별첨	업무시설 (지하 1층만-시설)

4) 서린구역
가) 지구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제 11 지구	종로구서린동 51 일대	2,450 ㎡	
변경	"	"	2,579.1 ㎡	용량변과함소

나) 건축계획변경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제율	용적율	높이	배설	주 용 도
기정	제 11지구	2,450 ㎡	39.2 %	670 %	15/3	별첨	업무시설
변경	"	2,579.1 ㎡	36 %이하	700 %이하	21/4	"	"

5) 다동구역							
가) 지구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제 12 지구	중구다동 2 의 3 일대		1,437 m ²		측량결과 감소	
변경	"	"		1,396.8 "			
나) 건축계획 변경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열	주 용 도
기정	제 12 지구	1,437 m ²	43.5 %	670 %	13/2	별첨	업무시설
변경	"	1,396.8 "	40%이하	550%이하	12층이하	"	업무시설 (지하 1층 판매시설)
6) 청진구역							
가) 건축계획변경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열	주 용 도
기정	제 1 지구	9,487.3 m ²	40 % 이하	670 %이하	15-18	별첨	업무시설
변경	"	" "	40 % 이하	540 %이하	22층이하	"	"
7) 도림구역							
가)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제 18 지구	종로구내수동 199-1 번지일대		12,943 m ²		지구분할	
	제 18-1 "	"		10,290 "			
	제 18-2 "	종로구내수동 159-1 번지일대		2,653 "			
8) 남대문구역							
가) 지구계획변경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제 8 지구	중구남창동 6 일대, 회현동 1 가		3,804 m ²			
	"	중구남창동 6 번지일대		2,453 "			
기정 변경	제 9 지구	중구회현동 1 가 195-7 일대		3,700 "			
	"	"		5,051 "			

나) 건축계획변경 결정요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적율	용적율	높이	배열	수리노
기정	제 8 지구	3,304㎡	-	-	-	-	상부
변경	"	2,453㎡	50%이하	600%이하	10층이하	발판	상부및중부
기정	제 9 지구	3,700㎡	-	-	-	-	상부
변경	"	5,051㎡	-	-	-	-	상부

<p>나. 관계도면: 별첨(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368 호</p> <p>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p> <p>1. 시공고 제 12 호(80.1.16)로 관리 처분계획 공람공고한 응암 2 구역 2 구획 및 4 구획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동법 제 6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 에 위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한다.</p> <p>2. 관계처분계획 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7.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위치: 응암 2 구역 2, 4 구획 243번지일대 면적: 4,510</p>	<p>서울특별시고시제 369 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82.10.20)로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인가 되어 응암 2 구획 2 구획 일대 인덕공업전문대학의 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을 변경하여 학교로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7.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정가: 도봉구일대동 648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허가 명칭: 인덕공업전문대학 서울캠퍼스 다. 사업의 규모</p>
--	--

1) 대지면적 : 78,307 m ² (23,688 평)		2) 건물면적 (지층 - 5층)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기	7,886 m ²	23,458 m ²		
초	324 m ²	1,672 m ²		
변경	1,198 (증 874) m ²	4,454 (증 2,782) m ²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도 봉구월계동산 76 학교법인 : 인덕학원이사장 최 금 봉 마. 사업시행기간 당초 82.10-83.7 변경 82.10-85.7.30 바. 공사계획평면도 : 생략		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 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시행 령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틀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2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370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변경결정고시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시장)을다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신설	소매시장	영등포구신길동 235-8 외 2 필지	2,843	
기정	"	성동구용답동 121 일대	3,888	
변경	"	" 121-1 일대	1,105	감 2,783 m ²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고시제 652 호 사도개설시행허가		시행을 사도법 제 4 조 및 동법 시 행령 제 2 조에 의거 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 1 조에 의거 고시 한다.		
1. 서울특별시도봉구방학동 705-17 번지 대지 1,802.4 m ² 에 대한 사도 개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7. 19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방학동 705-17번지
나. 사업의 종류 : 사도개설

다. 사업규모 : 1호선 폭 4.7 m, 연장 22.6 m. 2호선 폭 4.7 m, 연장 22 m
라. 사업시행자 : 도봉구 도봉동 423번지 김태한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공 일 : 사업실시 허가즉시
2)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개월
바. 토지소유자 주소·성명

지 번	지 적	지 목	소 유 자
도봉구 방학동 705-17번지	1,802.4㎡	대 지	도봉구 도봉동 423번지 김태한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90 호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 변경에따른서류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5 호 (80.4.9) 로 시행허가된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에 따른 서류의 동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내에 제출바람.

1983. 7. 15.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도곡동 산6-17의 11 필지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 3)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천환
- 4) 사업시행면적 (당초 24,436㎡ 변경 24,711㎡ (증 275㎡))

<p>5) 사업시행기간 당초 80.4.9 - 82.12.30 변경 80.4.9 - 83.10.30</p> <p>6) 기타 :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도로 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25-6593)에 문 의 또는 제출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제 391 호</p> <p>도로공사계획공고</p>	<p>1.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 및 도 로법 시행규칙 17 조에 의거 도 로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바 치 열람케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 7. 1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도로공사계획조서

로 선 명	공 사 구 간	공 사 명	시 행 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신수동 28-대흥동 62	신수동 28-대흥동 62 간 도로포장공사	마포구청	83.7-83.9
"	하수동 144-22 - 82-9	하수동 144-22-82-9간 도로포장공사	"	"
"	대흥동 500-5 - 487-7	대흥동 500 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	"	83.7-83.11
"	망원동 436-437	망원 2 동 복개 도로 조성공사	"	83.7-83.10
"	하수동 41 - 상수동 245-1	하수동 41 - 상수동 245-1 소방도로 개설 공사	"	83.7-83.11
"	성산동 산 23-2 - 246-7	성서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	83.7-83.12
"	아현동 353-329	아현동 353-329 하수 도공사	"	83.7-83.10
"	공덕동 105 주변	공덕동 105 주변	"	83.7-83.10
"	공덕동 175-32 - 175-25	공덕동 175-32 - 175 -25	"	83.7-83.10

로 선 명	공 사 구 간	공 사 번	구 분	구 분 번
서울특별시도	신공덕동 5-20 - 9-16	신공덕동 5-20 - 9- 16	차도부속	53.7-53.10
"	신공덕동 146-47 - 146-56	신공덕동 146-47 - 146-56	"	53.7-53.10
"	신공덕동 133-3 - 130-23	신공덕동 133-3 - 130-23	"	53.7-53.10
"	도화 1동 1 - 256 - 1-223	도화 1동 1 - 256 - 1-223	"	53.7-53.10
"	도화 2동 346-7 - 347-87	도화 2동 346-7 - 347-87	"	53.7-53.10
"	염리동 142-7 - 148-21	염리동 142-7 - 148-21	"	53.7-53.10
"	노고산동 106-88 - 106-95	노고산동 106-88 - 106-95	"	53.7-53.10
"	신수동 250-4 - 249-1	신수동 250-4 - 249 -1	"	53.7-53.10
"	신수동 62-91 - 250-26	신수동 62-91 - 250- 26	"	53.7-53.10
"	창전동 278-1 주변	창전동 278-1 주변	"	53.7-53.10
"	신정동 30-9 - 96-78	신정동 39-9 - 96-78	"	53.7-53.10
"	망원 1동 213-8 - 458-1	망원 1동 213-8 - 458-1	"	53.7-53.10
"	망원동 409-1 - 409-47	망원동 409-1 - 409 -47	"	53.7-53.10
"	망원동 454-9 - 462-9	망원동 454-9 - 462 -9	"	53.7-53.10
"	망원동 476-1 - 476-23	망원동 476-1 - 476 -23	"	53.7-53.10
"	망원동 479-13 - 479-6	망원동 479-13 - 476 -6	"	53.7-53.10

로 선 명	공 사 구 간	공 사 명	시 행 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망원동 432-4 - 428-37	망원동 432-4 - 428-37	마포구청	83.7-83.10
"	망원동 468-1 - 468-26	망원동 468-1 - 468-26	"	83.7-83.10
"	망원동 436-2 - 436-36	망원동 436-2 - 436-36	"	83.7-83.10
"	동교동 167-12 - 167-18	동교동 167-12 - 167-18	"	83.7-83.10
"	노고산동 57-34 - 57-37	노고산동 57-34 - 57-37	"	83.7-83.10
"	연남동 365-3 - 365-6	연남동 365-3 - 365-6	"	83.7-83.10
"	연남동 225-3 - 225-48	연남동 225-3 - 225-48	"	83.7-83.10
"	연남동 488-1 - 488-10	연남동 488-1 - 488-10	"	83.7-83.10
"	성산 1 동 23-1 주변	성산 1 동 23-1 연립 주택	"	83.7-83.10
"	성산동 217-8 - 217-10	성산동 217-8 - 217-10	"	83.7-83.10
"	상암동 12-30 - 12-4	상암동 12-30 - 12-4	"	83.7-83.10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공사 기간중에 시행토록 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공고제 392 호

K.S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
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공고 한다.

1983. 7. 18

서울특별시장

허가번호 : 제 51 호
 허가일자 : '75.10.7
 제조업체 : 애경유지 공업 (주)
 대표자 : 장 영 신
 소재지 : 구로구구로동 501
 규격번호 : KSM 2703
 품 명 : 고품 세탁비누
 종류등급 : 연품, 선품
 취소사유 : KS 표시허가 자진반납
 취소일자 : '83.7.18

◎서울특별시공고제 393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에따른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39 호 (83.3.10) 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70 호 (83.3.24) 로 지적승인된 강등구 신천동 20-40 번지 (잠실지구 261 부력) 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계획안 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바람

1983.7.18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장소 : 강등구청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 478-0620)

나. 공람기간 : 1983.7.18-1983.8.1
 (14 일간)

공 랑 개 요

- 사업시행지 : 강등구신천동 20-40 번지 (잠실지구 261 부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시장)
엄마손 상가 신축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883 ㎡
 - 건축면적 : 1,435.98 ㎡
 - 연 면 적 : 5,743.92 ㎡
-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강등구석촌동 277-2 번지(주) 대웅빌딩
대표이사 강 석 실

◎서울특별시공고제 394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77 호 (83.3.26) 로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행 허가된 강등구 상수동 1가 685 일지 에 대하여 공사완료되었기 도시계획비 제 57 조 2, 85 조 및 동법시행태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고한다.

2. 관계서류는 강등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이의신청기간은 1983.7.19

1983.7.18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성수 1가 685 일대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 3) 사업의 규모
면적 400,250㎡ 중 262,814.85㎡
연면적 : 기존 33,643.78㎡
증축 673.8㎡ (전후점량,
심판실 10 두마사)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성동교 성수 1가 685-20호
한국마사회 회장 이 전 영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수 : 83.4.25, 준공 : 83.7.18
- 6) 위치 및 계획평면도면 : 별첨생략
- 7) 준공도면 : 별첨생략
- 8) 기타 의문사항은 성동구청 도시
정비과 (445-8705) 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396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서공고 제 263(79.8.3) 호로 공람공
고된 용산 1구역 과 재이 443.2-1237
(79.11.5) 호로 관리처분 변경된 연
희 3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
경사유가 있어 도시계획법 제 41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일부변
경하여 고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 일

간 토지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2. 동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등에
게 개별등기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동공고로 갈음하고
변경대상 물건지에 대하여는 동제
획 변경인가시까지 사용수익을 제
한하며 관제도는 관할구청 주택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83.7.20
서울특별시장

가. 명칭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제
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나. 위치 : 용산구용산동용산 1 구역
(9,24 구역)
서대문구연희동 172번지일대

◎서울특별시공고제 398 호

루기과열지구지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루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다.

1983.7.20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 외 2 필지
- 2. 면 적 : 25,240㎡
- 3. 아파트명 : 장안동 현대아파트
- 4. 규 모 : 아파트 12층 8동 456 세대
- 5. 사업주체 : 한국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최 수 일

◎ 서울특별시공고제 399 호

도림구역제 14 지구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76 호 (77.4.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14 호 (83.2.28) 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림구역 제 14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7.2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도림구역 제 14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종로구 당주동 57-1 외 51 필지

- 다. 시행면적 : 5,569.7㎡
- 라. 대지면적 : 4,189.6㎡
- 마. 공공시설 부담면적 : 1,380.1㎡
- 바. 건축계획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한다)
 - 건폐율 : 45% 이하
 - 용적율 : 670% 이하
 - 용 도 : 업무시설
 - 층 수 : 15 층 이하
 - 배 절 : 도로상제한 10 미터 이상 후퇴

상. 시행자 : 도림구역 제 14 지구 재개발조합 (주식) 조합장 김 신 등

하.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 별첨 (상라)

자. 시행기간 : 1983.8.1() ~ 1986.2.28

차. 공람기간 : 1983.7.20 ~ 8.19

카.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재개발과 (72-4427)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24 호

관 인 폐 기 공 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4 조 및 제 6 조에 의거 시흥제 1 등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한다.

1983.7.13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제 목 : 시흥제 1 동 관인폐기
 나. 관인명 : 시흥제 1 동장인
 다. 폐기사유 : 마멸로 인한 신조개각
 라. 폐기일시 : 83.7.19 18:00
 마. 폐기관인내역


시흥제 1 동 관인을 다음과 같이 개각 공고한다.

1983.7.15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인 영	
공인명	시 흥 제 1 동 장 인

가. 제 목 : 시흥제 1 동 관인개각
 나. 관인명 : 시흥제 1 동장인
 다. 개각사유 : 마 멸
 라. 사용일자 : 83.7.20 09:00
 마. 승인관인내역

인 영	
공인명	시 흥 제 1 동 장 인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25 호

관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사 령

© 1983 년 7 월 16 일 자

호 26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송 용 석	만남의광장운영담당관	내 무 국	지방서기관
최 후 복	운영요원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구 연	"	도 봉 구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오 형 철	"	성 동 구	"
안 철 석	"	서 대 문 구	"

성명	발령사합	현부서	직급
최병주	만남의광장운영요원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임승익	"	성북구	"
이영환	"	도봉구	"
야길형	"	강남구	"
문숙자	"	종로구	"
최광일	"	성동구	"
고명숙	"	"	"
한은수	"	"	"

령서 272 호

성명	발령사합	호봉	직급	비고
김병연	중구	5호봉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신규
최후복	"	6호봉	지방행정주사보	"
조윤제	용산구	3호봉	지방행정주사보시보	"
이호기	성동구	"	"	"
오형철	"	"	"	"
김구연	도봉구	"	"	"
김상호	서대문구	5호봉	"	"
이경현	"	3호봉	"	"
안철식	"	5호봉	"	"
최병주	영등포구	3호봉	"	"
유두종	관악구	4호봉	"	"
방정완	서대문구	3호봉	"	"
최영진	종로구	7호봉	"	"
김형만	성북구	5호봉	"	"
김윤식	영등포구	3호봉	"	"
정필원	동작구	1호봉	"	"

령서 273 호

성명	발령사합	호봉	직급	비고
김태기	종로구	7	지방행정서기보시보	

59-52

제 975 호

시

보

1983.7.14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비고
김영태	총로구	16	지방행정서기보시보	
홍사용	"	8	"	
문숙자	"	4	"	
박명진	중구	7	"	
최진영	"	7	"	
조정형	"	7	"	
김차숙	"	8	"	
허두형	용산구	5	"	
장석진	"	8	"	
변세진	"	6	"	
윤순득	"	5	"	
손성일	성동구	5	"	
고재홍	"	6	"	
이인근	"	11	"	
김성한	"	5	"	
홍석양	"	6	"	
곽문수	"	5	"	
김구일	"	7	"	
김선복	"	7	"	
박재섭	"	11	"	
김병일	"	5	"	
허은	"	7	"	
조경희	"	4	"	
최광임	"	5	"	
고명숙	"	4	"	
한은수	"	7	"	
김종성	동대문구	5	"	
한문섭	"	5	"	
인완기	총로구	7	"	
김해승	중구	8	"	

성명	남명사항	호봉	직급	비고
박민선	동대문구	5	지방행정서기보시보	
김홍기	성북구	9	"	
일승익	"	7	"	
기명자	"	5	"	
안해경	"	5	"	
김승원	종로구	4	"	
김용욱	도봉구	5	"	
이영환	"	7	"	
김대웅	"	5	"	
신상민	"	9	"	
문원태	"	4	"	
손효선	"	5	"	
김성중	종로구	11	"	
원종영	은평구	7	"	
한진구	"	7	"	
임차백	"	5	"	
이영진	서대문구	13	"	
이용철	"	9	"	
신창식	"	12	"	
조성은	"	7	"	
이성욱	"	5	"	
이남춘	"	17	"	
박해준	"	4	"	
김경우	"	6	"	
이성호	마포구	10	"	
이민우	"	5	"	
방승현	"	5	"	
김세훈	강서구	6	"	
홍은수	"	9	"	
원종관	강서구	8	"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비고
박유섭	강서구	8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최관섭	"	7	"	
윤해정	"	5	"	
권숙자	"	8	"	
유범근	구로구	6	"	
진상천	구송구	5	"	
송지호	영등포구	4	"	
지준석	영등포구	5	"	
김민기	영등포구	5	"	
이의순	영등포구	8	"	
박영환	"	8	"	
조동석	"	6	"	
장현택	종로구	6	"	
정진남	종로구	4	"	
이승한	"	8	"	
김동일	"	7	"	
유관순	"	8	"	
김재화	"	7	"	
신숙희	"	6	"	
박영준	관악구	11	"	
이형철	"	9	"	
박종식	"	4	"	
박연재	"	8	"	
이현화	"	5	"	
야길형	강남구	5	"	
김영순	"	4	"	
임완수	강동구	10	"	
양경석	"	11	"	
김영수	"	12	"	
신동규	"	4	"	

성 명	발령 사항	호 봉	직	급	비 고
심우원	강동구	7	지방행	정서기보시보	
채미숙	"	6		"	
김영금	"	5		"	
조정숙	"	4		"	
방진석	은평구 건설행정과 (가로 정비요원) 파견 (83.7.16-83.8.15)	7		"	
차추만	강동구 건설행정과 (가로 정비요원) 파견 (83.7.16-83.8.15)	8		"	
정홍표	도봉구 운수 2과 (위반차 량단속요원) 파견 (83.7.16-83.12.31)	7		"	
김광명	서대문구 운수 2과 (위반차 량단속요원) 파견 (83.7.16-83.12.31)	15		"	
박종	동작구 운수 2과 (위반차 량단속요원) 파견 (83.7.16-83.12.31)	10		"	
홍석표	강남구 운수 2과 (위반차 량단속요원) 파견 (83.7.16-83.12.31)	4		"	
					서 274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영근	공보관직대	강남구사무국장	서 기 관		

<p style="text-align: center;">경색 279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철 도 청 행 정 주 사 최 한 규</p> <p>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철 도 청 기 제 기 사 김 영 년</p> <p>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기계기사에 임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p>
---	---

◎ 1983년 7월 20일자

공 280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용 우	기획관리실시정개발담당관	동작구수도공사과	지방행정서기
이 용 백	"	용산구수도관리과	"
임 회 철	"	" 용산2가동	"
한 무 호	"	강동구방이동	지방행정서기보
김 소 영	"	동작구시민봉사실	"
한 경 숙	"	서대문구대신동	"
이 규 환	내무국행정과	송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신 충 현	산업경제국농축과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 종 근	"	사 회 과	"
윤 갑 심	"	용산구민방위과	"
유 종 원	공 보 관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행정주사보

공 281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 남 수	종합건설보부	구로구 (단전점전반)	지방토목기사
송 석 표	"	동작구 (")	"
김 구 환	"	도봉구 (한강개발과전)	"
진 영 남	"	은평구 (")	"
이 호 찬	"	영등포구 (")	지방토목기사보
방 준 갑	"	동대문구 (")	지방토목기사
정 래 현	"	동작구 (")	지방토목기사보
최 동 순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호 섭	도시계획국	마 포 구	지방토목기사
강 판 근	성 동 구	강 동 구	"
신 흥 섭	관 악 구	"	"
한 절 숙	도 봉 구	"	"
김 병 철	은 명 구	종합건설본부	"
신 건 용	강 서 구	강 동 구	"
심 진 섭	구 로 구	영 등 포 구	"
이 강 수	"	강 동 구	"
박 만 환	영 등 포 구	관 악 구	"
김 화 수	마 포 구	구 로 구	"
이 송 직	강 동 구	성 동 구	"
임 재 남	"	동 대 문 구	"
정 동 진	"	종합건설본부	"
신 태 관	"	"	"
령제 282 호		령제 283 호	
총 로 구	이 성 호	치 수 과 장	장 안 식
토 목 기 좌		토 목 기 정	
강 동 구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강 동 구	신 형 빈	용 산 구	신 명
지 방 토 목 기 좌		토 목 기 좌	
용 산 구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의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종로구근무를 명함.	
령제 284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임 오 번	행정주사보에 임함	중구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상현	행정서기에 임함	중구기획조사과	지방행정서기
박지경	행정주사보에 임함	선복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성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주택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필현	행정주사에 임함	관악구산업과	지방행정주사
김두점	행정주사보에 임함	강남구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이기훈	"	"	"
김옥삼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세무2과	지방행정주사보
하인규	"	건설관리과	"
김규섭	"	강동구도시정비과	"

합계 285 명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위
오영	사회과근무를 명함	보건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